

**1****인용 조문 정비(영§42의2④)****① 개정개요**

※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인용조문 정비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과세제외 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면허세 과세제외 대상 조문 정비 및 명확화
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좌 동)
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인용 조문 정비 등

**□ 개정내용**

- 인용법령 변경 등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과세제외 대상 규정 정비

## &lt; 인용법령 변동사항 &gt;

종 전	변 경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	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

**□ 적용요령**

- 개정 규정은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